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함(주서본 참조).

(현행법 규정을 고려하여 용어 정리 필요)

- 개정안은 관계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¹⁾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현행법에서는 모두 “관계 광역

1)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의2(종합적 사업관리)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통합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(이하 이 조에서 "종합적 사업관리 용역"이라 한다)을 발주할 수 있다.

시장 및 도지사”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²⁾ 이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<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9조의3(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) 관계 <u>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	제9조의3(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) -- <u>광역시장·도지사</u> 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

- 2)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, 관계 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8조(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「공항시설법」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종합계획"은 "기본계획"으로, "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"은 "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"로 본다.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.